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수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행정예고 목적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하여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을 갖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행정예고하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 방해행위)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행정예고 기간: 2026. 1. 15.(목) ~ 2. 4.(수)(20일간)

4. 행정예고 방법: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게시

5. 행정예고 내용 :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가. 시행일: 2026. 2. 5.(목)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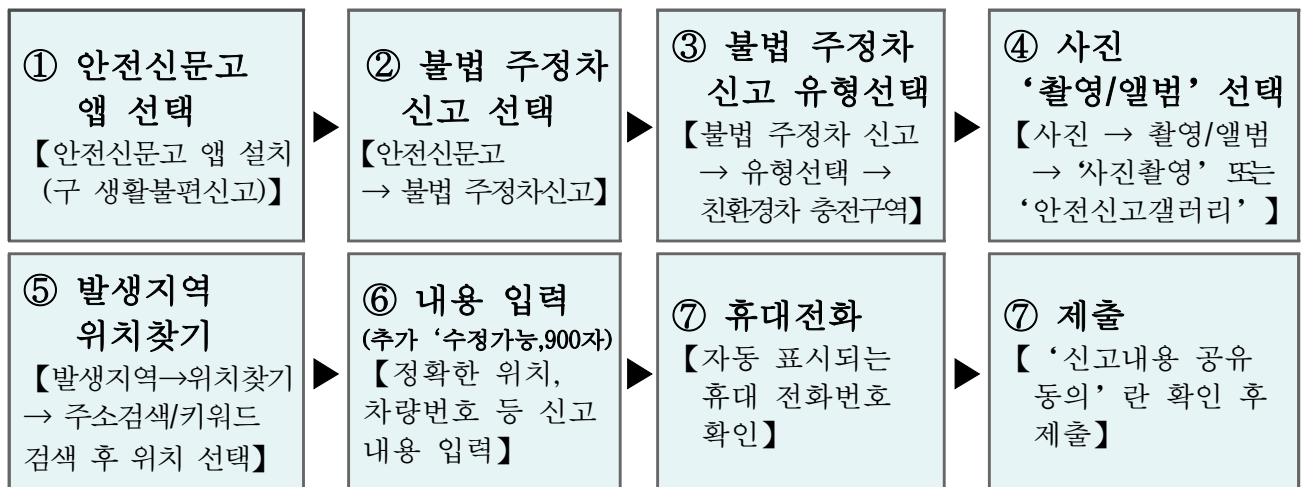
나. 변경사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 주요변경 내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신고 방법 변경
-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신고시 브레이크 결속 확인을 위해 차량을 미는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라. 신고 대상 : 서구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차량

마.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을 통해 촬영, 신고



바. 신고 기한 : 위반사항 촬영일시 기준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사. 신고(접수)요건 :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동일 위치 및 방향)

- 1)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전용주차 구역내에 주차가능 차량 외 주차 시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2)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의 충전구역에 법령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 구분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 급속   | ① 최초 촬영사진<br>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 ① 최초 촬영사진<br>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       |               |  |
| 완속   | 현행  | ① 최초 촬영사진<br>② 5~9시간 후 촬영사진<br>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       |               |  |
|  | ※단속예외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       |               |  |
|  | 변경  | <table border="1"> <thead> <tr> <th>전기자동차</th> <th>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th> </tr> </thead> <tbody> <tr> <td> <b>① 최초 촬영사진</b><br/> <b>② 5~9시간 후 촬영사진*</b><br/> <b>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 사진 3장 중 ②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br/>           **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td> <td> <b>① 최초 촬영사진</b><br/> <b>② 3~5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b>③ 7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 사진 3장 중 ②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br/>           **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td> </tr> </tbody> </table>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b>① 최초 촬영사진</b><br><b>② 5~9시간 후 촬영사진*</b><br><b>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사진 3장 중 ②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br>**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 <b>① 최초 촬영사진</b><br><b>② 5~9시간 후 촬영사진*</b><br><b>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사진 3장 중 ②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br>**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 <b>① 최초 촬영사진</b><br><b>② 3~5시간 이후 촬영사진*</b><br><b>③ 7시간 이후 촬영사진</b><br>* 사진 3장 중 ②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br>**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  |       |               |  |
| ※단속예외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  |       |               |  |

- 3)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GPS 위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위반장소 명시 권고
- 4) 충전구역 바닥면 표시,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5)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신고 시 증빙자료(동영상) 첨부 필요  
※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걸속확인을 위해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행위 필요

(추가) ① 최초 촬영 사진  
② 1분 이후 촬영 사진  
③ 동영상(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 가능한 영상)

- 6)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은 인정 불가

**아. 처리불가 신고사항**

-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 2)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 3)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 4)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휴대폰 등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5)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 ※ 2대 이상 차량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1대씩 각각 신고
- 6) 동일한 차량이 일정기간 내 다수 신고된 경우,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 가능할 시 1건으로 처리
  - ※ 일정기간이란 최초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후 3일 이내를 말함
- 7) 충전시설이 개통 전이거나 고장으로 미운영 중인 경우
- 8)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써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서구청이 판단하는 경우

**자.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차.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보상금 없음)**

| 구분    | 단속 대상   | 근 거  | 과태료 부과금액 |
|-------|---|--|----------|
| 주차 위반 |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li>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li> </ul>                           | 10만원     |
|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li>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li> </ul>                           | 10만원     |
| 충전 방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1호</li>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li> </ul> | 10만원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2호</li>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li> </ul> | 10만원     |
|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li> </ul>   | 10만원     |

|   |  |      |
|---|--|------|
|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3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6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전기자동차-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7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br><br>☞ 단속 예외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제2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8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4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5호<br>◦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

### 카. 단속 예외시설 운영

1) 운영 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운영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①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②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3) 운영 조건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6. 과태료 처분 행정사항 :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의견제출·이의제기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함.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2. 5.(수)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서구청 기후대기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처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별관 4층) / (우) 22726

- 팩스 : 032-560-2751

바. 문의처 : 서구청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3)

사.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br>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br><br>(전화번호: )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